##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2

발의연월일: 2020. 6. 30.

발 의 자:김원이·서영교·이원욱

인재근・박 정・박홍근

서삼석 · 송옥주 · 신정훈

진성준 · 김철민 · 문진석

양이원영 · 양정숙 · 유재갑

윤준병 • 이장섭 • 이형석

임호선 · 조오섭 · 최종윤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익 공유체계를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받고 있음.

유럽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으며 협동조합 등을 통한 주민참여 모델이 일반화 되어 있음. 독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해 사업에 참여하게 하고 있고, 미국 워싱턴 주에서도 태양광 설비 프로젝트에 인근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생에너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주민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합원으로 출자하 는 방식
  -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식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신·재생에너지 발전사
	업에 대한 주민 참여) ① 신·재
	생에너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
	식으로 해당 지역의 신·재생에
	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
	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
	전사업자는 그 발전사업의 지
	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
	주민에게 할당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출자하는 방식
	2.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협
	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된 협동조합을 말한다)에 조
	합원으로 출자하는 방식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방식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u>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u>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

<u>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u>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기준·절차·내용,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 로 정한다.